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 결과 통지서

장려금 신청서 접수번호						
사업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법인명)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FAX번호		담당자 이메일주소	
신규채용한 고용촉진 근로자 신청 내역				검토 결과		
성명	생년월일	근로자유형	근로계약유형	지급여부	지급대상기간	지원 결정액
				<input type="checkbox"/> 지급 <input type="checkbox"/> 일부지급 <input type="checkbox"/> 부지급	2022.1.1.~2022.6.30	
합계						
부지급 또는 일부지급 사유						
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안내사항						
1. 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